

방송 관련 몇가지 저작권 분쟁 이슈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월례발표회

SBS 변호사 안재형

- 목차 -

I 드라마 제작과 권리관계

1. 외주제작의 형태
2. 방송법상 외주제도
3. 외주제작 드라마의 권리 귀속
4. 드라마의 저작권 분쟁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1. 연예인 특종 사진의 이용
2. 제3자의 저작물 이용 사례
3. 소품 등의 사용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1.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표절사례
2.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의 어려움
3. <짜> 사건

IV 방송사와 저작권 단체의 권리 관계

1. 방송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처리
2. 분쟁 사례

I 드라마 제작과 권리관계

1. 드라마 제작의 형태



제작요소 : 기획, 작가, 연출자, 주요 연기자, 제작 스태프, 제작 자원

- 완전 외주형 : <태양의 후예>(16' KBS방영), <사임당 : The Her Story>(17' SBS 방영)
- 공동제작형 :
- 위탁제작형(하도급형) :

1 드라마 제작과 권리관계

2. 방송법상 외주제도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I 드라마 제작과 권리관계

3. 외주제작 드라마의 권리 귀속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① 제작중인 드라마의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

- 권리의 선판매 또는 이중양도 문제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판례 별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I 드라마 제작과 권리관계

3. 외주제작 드라마의 권리 귀속

② 저작권의 귀속과 불공정행위

[외주계약상 저작권조항]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에 따라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다.

1 드라마 제작과 권리관계

3. 드라마의 저작권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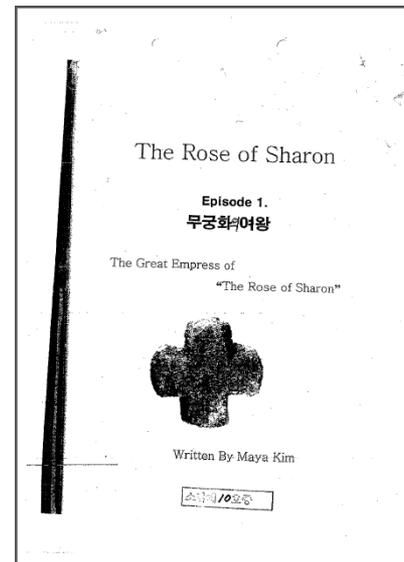
I 드라마 제작과 권리관계

4. 드라마의 저작권 분쟁

- 드라마 <선덕여왕> vs. 뮤지컬 대본 <무궁화의 여왕>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와 이 사건 대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이 이 사건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드라마가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들의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작성, 드라마 제작, 방송 및 판매, 이 사건 드라마의 DVD 제품과 관련 소설의 제작 및 판매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대본에 관한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관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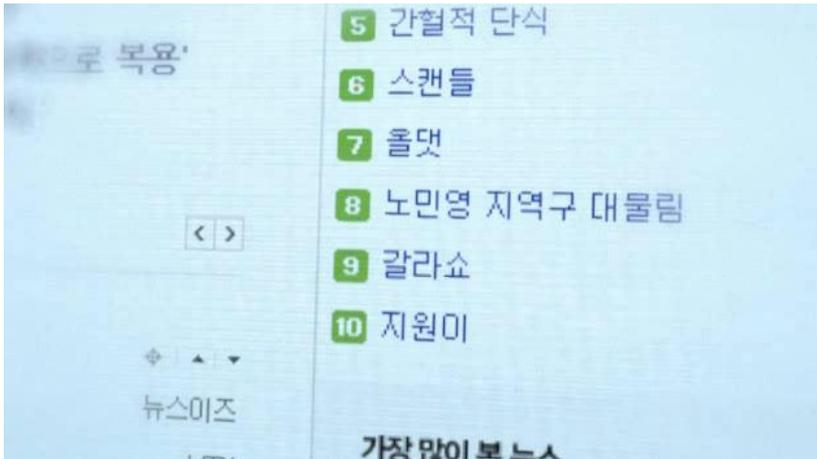
1. 연예인 특종 사진의 이용



<모닝와이드>2부 "굳모닝 연예" 2014. 3. 6.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1. 연예인 특종 사진의 이용



<내 연애의 모든 것>(14회) 2013. 5. 22.
- 오연서, 이장우 데이트 사진 사용



<런닝맨>(153회) 2013. 7. 7.
-박지성, 김민지 데이트 사진 사용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1. 연예인 특종 사진의 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 사건 각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2. 33. 선고 2008다44542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사진은 연예인 남녀, 유명 운동선수와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을 보면, 원고 소속 기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기술도 특정 남녀의 사적 만남을 전달하기 위하여 촬영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촬영 후의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배경, 구도, 조명, 빛의 양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을 가미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이 사실전달 목적의 가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4나51591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24530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1. 연예인 특종 사진의 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손해배상])

모발이식 전후 사진과 상담내용을 무단 이용한 사례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2. 제3자의 저작물 이용 사례



<도시의 법칙 in 뉴욕>(1회) 2014. 6. 11.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2. 제3자의 저작물 이용 사례



<궁금한 이야기 Y> 2013. 3. 29.
- <추적60분> 영상 사용



<키스먼저 할까요?>(18회), 2018. 3. 19.
- 이현 시인 시집 <너는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다>에 수록된
철저히 계획된 내일이 되면 어제를 비로소 이해하고>의 전문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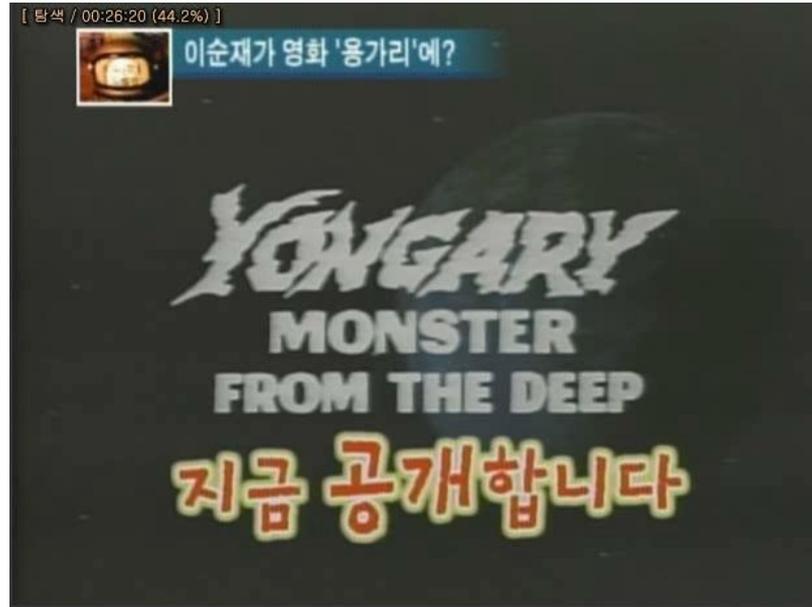
2. 제3자의 저작물 이용 사례



<런닝맨> 430회 2016. 5. 8.
- 시그널 영상사용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2. 제3자의 저작물 이용 사례



<신동엽의 있다! 없다?>2007. 3. 23.

- <대괴수 용가리>(67') 영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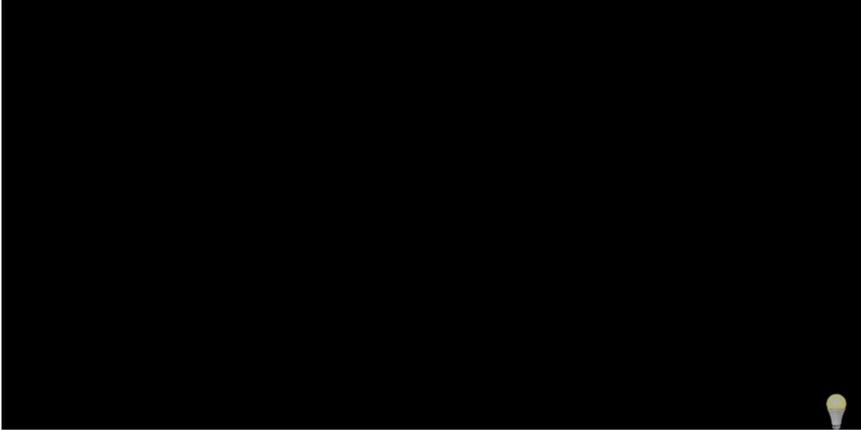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 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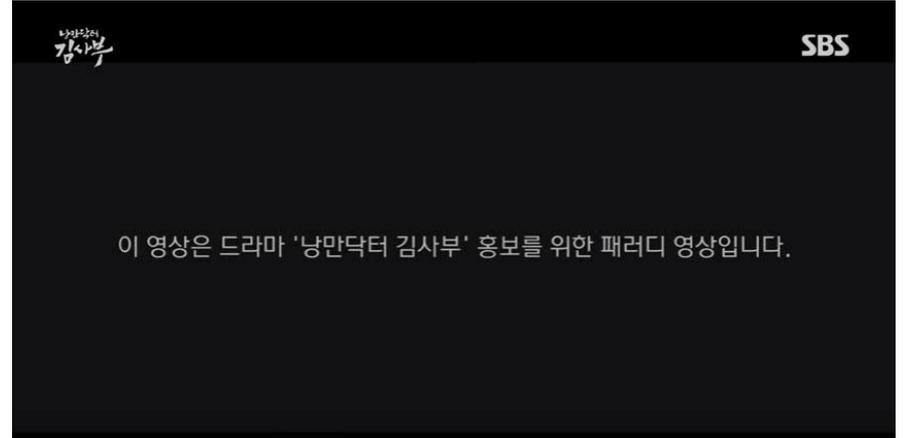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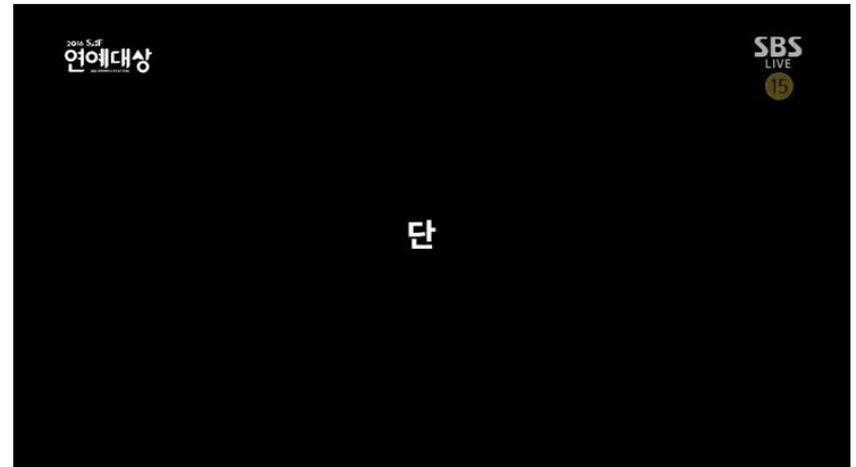
2. 제3자의 저작물 이용 사례



iPhone 107초 광고



<낭만닥터> 인터넷 티저



<SBS 연예대상>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3. 소품 등의 사용



<패션왕> 2012. 4. 2.(5회)
- Andy Warhol <flower>, <marilyn monroe>



<딴따라> 6회 2016. 5. 5.

II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3자의 저작물 이용

3. 소품 등의 사용



<판타스틱 듀오2> (17'11. 26)

Good Night (Manhattan)

index



Good Night (Manhattan), 2014
Krink on canvas
20 x 24"

윤협/김도희 'Good Night (Manhattan)'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1.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표절사례

중국에서의 한국 방송프로그램 이용(웃찾사, 개그콘서트 vs 다 같이 웃자, 2014')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1.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표절사례

중국에서의 한국 방송프로그램 이용(판타스틱 듀오 vs Come Sing with me, 2016')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2.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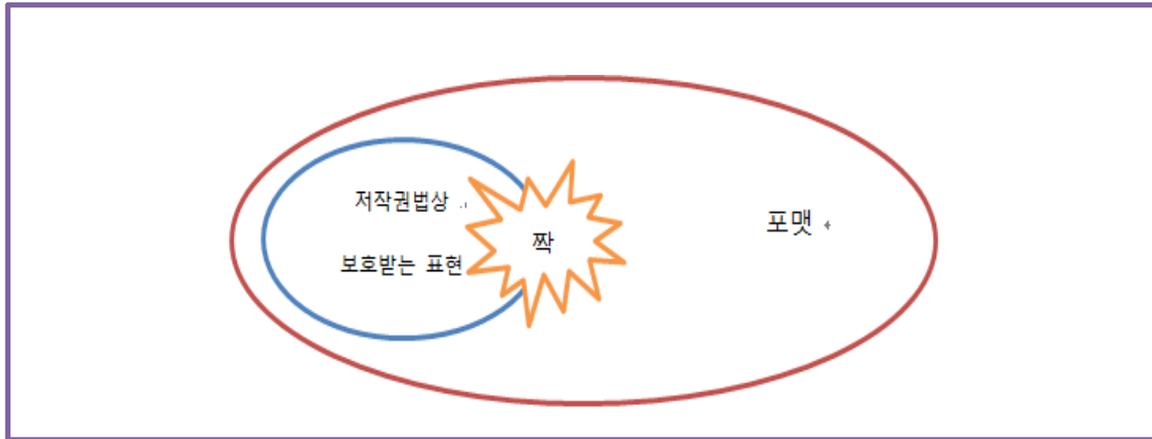
구 저작권법(2006.12.28.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 창작적 표현, 포맷, 아이디어의 관계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2.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의 어려움

Ninja Warrior vs. Wipe out



Tokyo Broadcasting System(TBS)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ABC) ; Endemol USA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2.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의 어려움



영국 ITV <Splash!>2013. 1 ~ 2014. 2

- 네덜란드 <Celebrity splash> 포맷

-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쉬>(2013.8 .23.~9. 13.)



<맨발의 친구들>2013. 6 ~ 2013. 8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3. < 짹 > 사건

- SBS : 2011. 3. 23. < 짹 > 방송 (원고 영상물)
- CJ&M : tvN 채널을 통해
<SNL코리아>에서 '짹 재소자특집 1부'(12' 6/16),
'짹 재소자 특집 2부'(12'6/23), '짹 재소자 리턴즈'(16' 7/14),
'짹 메디컬 특집'(12. 10. 6.) 방송
(피고 영상물 1)

웹사이트에
RIFT 게임 홍보물인 '짹공 게이머특집' 예고편(1분),
1부 만남편(20분), 2부 느낌편(15분), 3부 최종선택편(10분) 전송
(피고 영상물 2)
- SBS, 2014. 9. 21.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가합80298) : 원고 청구 기각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 원고 항소 기각
- 3심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 일부 파기환송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3. < 짹 > 사건

※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 1, 2 비교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3. < 짹 > 사건

- 2심 판결

[원고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 1,2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원고 영상물은 전문배우가 아닌 일반인인 남자와 여자 출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과정에서의 행동과 대화, 사건에 대한 출연자의 개인적인 독백 등이 영상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회분의 방송에 해당하는 영상물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면이 차지하는 분량 자체는 많지 않다.

... 피고 영상물 1, 2는 원고 영상물을 기초로 하여 구상, 기획되었으나, 원고가 독창적인 장면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원고 영상물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한 영상이 원고 영상물 자체의 특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 원고 영상물의 제목인 '짹'은 결혼 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짹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물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그 방송영상물을 특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품과 그 출처 또는 영상물을 방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원고가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영상시리즈의 제목으로 "짹"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사용 형태와 그 의도, 사용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실제 방송계에서 "짹"이란 영상물의 제목의 사용이 그 영상물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 영상물의 제목인 '짹'이 주지성을 취득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가 사용한 상품표지라 주장하는 '짹', '짹궁'과 원고 영상물의 제목인 '짹'은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므로 표지 그 자체만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짹'과 피고의 '짹', '짹궁' 사이에 혼동 또는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에 부족하며 ...

원고 영상물의 제목과 그 영상물에 포함된 장면들이 원고의 상품 등이나 영업표지로서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3. < 짹 > 사건

- 2심 판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원고 영상물이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만, 원고 영상물의 표현과 구성 등은 기존의 영상물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낸 방송프로그램 진행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 원고와 같은 방송사업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 영상물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밖에는 피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영상물 1, 2를 제작한 것이므로 ...그것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III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권리 보호

3. <짜> 사건

- 대법원 판결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

원고 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축적된 방송 제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만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 방침에 따라 배열한 원고 영상물은 이를 이루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 1 사이에는 프로그램의 성격, 등장인물,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내용 및 그 구성 등에서 표현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 2 사이에는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원고 영상물의 창작적 특성이 피고 영상물 2에 담겨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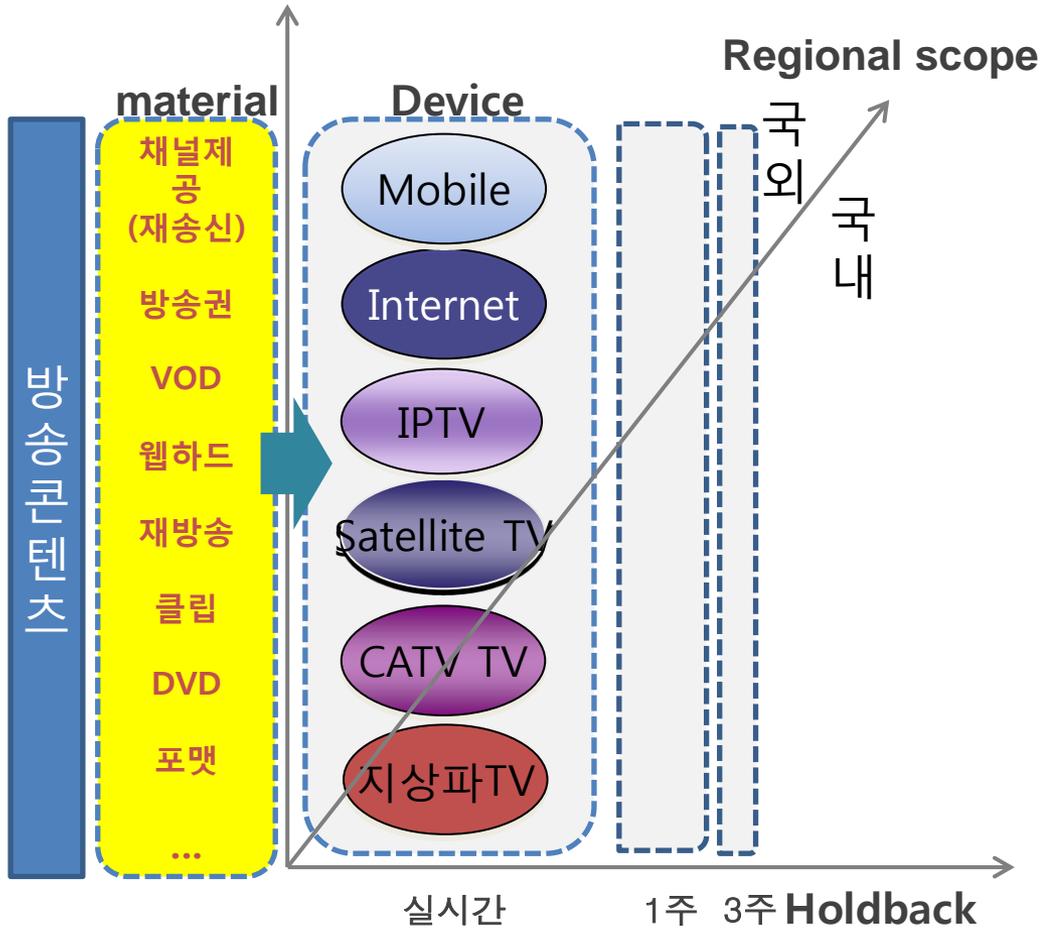
원심은 원고 영상물에 관하여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창작성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 영상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인정 X

- 대법원 판결의 의의

IV 방송사와 저작권단체의 권리관계

1. 방송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처리



저작권 신탁단체	권리 대상
음악저작권협회 (KOMCA)	음악저작물 (작곡/작사가)
방송작가협회	대본 (드라마, 예능, 다큐 등)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사진, 미술 등
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 권리
음악실연자협회	음악실연자 권리 (가수, 연주자)
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 권리 (탤런트, 코미디언, 성우)

IV 방송사와 저작권단체의 권리관계

1. 방송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처리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르 징수하여 분배하는 역할

IV 방송사와 저작권단체의 권리관계

2. 분쟁 사례

- 지상파방송의 유료방송을 통한 재송신에 대한 작가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

[단체협약서]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방송'이란 을(SBS)이 최초로 실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재방송'이란 (1)항의 본방송 이외의 모든 방송을 말한다.

...

(5) '복제 배포'란 프로그램을 녹음 도는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 포함), 비디오업자 등 일반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작가협회	지상파방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TV는 쌍방향형이므로 전송 혹은 제3의 유형이므로 '방송'은 아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새로운 저작권 행사이므로 기존 협약서 규정에 따를 것은 아님• 재송신으로 방송사가 얻는 추가수익은 방송작가의 기여분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사와 협회 간 체결된 협약서 상의 '방송'은 저작권법상의 '방송'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함• 협약서는 '본방송'과 '재방송'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시간 재송신은 최초로 실시하는 '본방송'에 포함됨• 작가와 방송사간의 집필계약서에는 방송한 후의 2차사용에 대해 작가협회와의 협약에 따른 사용료를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됨• 방송사의 광고수익 감소분의 일부만이 재송신료로 보충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고려될 필요 있음

IV 방송사와 저작권단체의 권리관계

2. 분쟁 사례

협회의 신탁관리 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징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방송료

방송사가 최초 1회 방송하는 것을 '본방송'이라 하며, 본방송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같은 채널에서 다시 방송하는 것을 모두 '재방송'이라 합니다. 이러한 재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요율
KBS, MBC	지상파 기본극본료의 30%
SBS	지상파 기본극본료의 25%
EBS	EBS 기본극본료의 25%
중편4사 (JTBC, TV조선, 채널A, MBN)	중편 기본극본료의 18~20%
케이블 방송사(CI 등 PP사)	케이블 기본극본료의 20~25%

◆ 네트사용료

MBC와 SBS가 프로그램의 전국 중계를 목적으로 지역MBC사 및 지역민방 9개사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동시중계방송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를 말합니다.

방송사	요율
MBC	전국: 기본극본료의 15%, 로컬: 기본극본료의 12%
SBS(지역민방9개사)	기본극본료의 13%

◆ 복제·배포·전송 사용료

'복제'배포란 프로그램이나 대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녹화, 인쇄 및 기타 방법으로 다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이란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유무선 인터넷 상에서 전송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방송사 및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제3자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공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공급형태	요율
해외방송사 등에 제공시	드라마 : 공급금액의 3.5% 드라마 외 : 공급금액의 3.0%
방송권을 종합유선방송사 등에 공급시	공급금액의 4.8%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3자에게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국내)	공급금액의 5.5%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시	공급금액의 4.5%
전송권(MOD, 모바일, IPTV 등에 공급)	총매출의 3% 이내

IV 방송사와 저작권단체의 권리관계

2. 분쟁 사례

- 방송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유통시 음원 저작권료 부담자 문제

IV 방송사와 저작권단체의 권리관계

2. 분쟁 사례

- 지역방송사를 통한 본방송(네트방송)에 대한 저작권료(네트료) 지급 문제
 - 한국방송작가협회는 MBC 상대로 약정금 지급/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협약은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대한 사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협약 제4조는 원고의 약정 네트료 지급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피고가 지역 계열사들로부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네트방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지역 계열사들과 체결한 'MBC 방송 네트워크 기본협정'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가 지역 계열사들로부터 직접 받을 네트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받았다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가 회원인 방송작가들의 이용허락 하에 외주제작사들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이에 수반한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아 지역 계열사들을 통해 네트방송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과적으로 피고는 외주제작사와의 계약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공급받아 그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 네트방송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2081995 판결, 현재 대법원 계류 중)

감사합니다.